

(별표 1)

직원경력소요연수표

(일반직·기술직)

승급기간	호	소요경력연수 (년·월)	승급기간	호	소요경력연수 (년·월)
1년 6월	40	43.9	1년	20	19.0
	39	42.3		19	18.0
	38	40.9		18	17.0
	37	39.3		17	16.0
	36	37.9		16	15.0
	35	36.3		15	14.0
	34	34.9		14	13.0
1년 3월	33	33.6		13	12.0
	32	32.3		12	11.0
	31	31.0		11	10.0
	30	29.9		10	9.0
	29	28.6		9	8.0
	28	27.3		8	7.0
	27	26.0		7	6.0
1년	26	25.0		6	5.0
	25	24.0		5	4.0
	24	23.0		4	3.0
	23	22.0		3	2.0
	22	21.0		2	1.0
	21	20.0		1	

(별표 2)

신규임용호봉적용기준표

(일반직·기술직)

구 분	적 용 호 봉
○ 대졸이상(현역(병(兵)기준)만기 전역)	9호기준 군복무 개월수만큼 호봉에 반영
○ 대졸이상(군미필·면제자)	9호
○ 전문대졸(현역(병(兵)기준)만기 전역)	7호기준 군복무개월수만큼 호봉에 반영
○ 전문대졸(군미필·면제자)	7호
○ 고졸(현역(병(兵)기준)만기 전역)	1호기준 군복무개월수만큼 호봉에 반영
○ 고졸(군미필·면제자)	1호

※ 병(兵) 이외에 장기복무자(장교, 부서관 등)의 경우 경력연수환산표에 의거 호봉을 책정함.

(별표 3)

경력연수환산표

분류	경 력 종 별	환산율
가	1. 본교 재직기간(동일 직종) 2. 특수 기술업무 등 전력이 채용직무와 연관된 재직기간(동일 직종) 3.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 재직기간(동일 직종) 4. 채용직무와 연관된 분야의 석사학위 기간(2년한, 학위취득자에 한함) 5. 채용직무와 연관된 분야의 박사학위 기간(4년한, 학위취득자에 한함)	100%
나	1. 각종 단체, 회사, 기타 공무원 재직기간(동일직종) 2. 가 3호 이외의 교육기관 종사 기간 3. 특수 기술업무 등 전력이 채용직무와 연관된 재직기간	50%

(비고)

1. 분류 '가' 2·4·5호 및 분류 '나' 3호의 기간은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함
2. 경력연수 환산은 학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연(年)단위로 적용함
3.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시간제 근로와 인턴 재직기간은 경력연수 환산에서 제외함
4. 채용직무의 내용여하에 따라 경력연수환산율 이내에서 가감적용할 수 있음
5. 군복무기간은 종별(육군, 공군 등) 병(兵)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월(月)단위로 적용함. 장기복무자(장교, 부서관 등)의 경우 동일 종별(육군, 공군 등) 병(兵)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한 기간은 위 경력연수환산표 분류 '나'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年)단위 인정함
6. 경력연수환산표상 '동일직종' 여부는, 직원인사규정 제3조(직종 및 직급)에 의거하여 채용직종과 근무경력 간에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 전반에 따라 본교가 판단함

(별표 4)

직급체류연한표

(일반직·기술직)

직급	체류연한
부장(참여·부참여)	—
차장(참사·기술참사)	5년
과장(부참사·기술부참사)	5년
계장(주사·사서·실험기사)	5년
주임(부주사·부사서·실험부기사)	3년
직원(서기·사서보·실험기사보)	3년

(비고)

1.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자의 경우 경력연수환산표(별표 3) 상 분류 '가' 2·4·5호 및 분류 '나' 3호에 해당하는 경력연수를 직급체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직원, 주임 직급에 한함)

(별표 5)

기능직(1종·2종)직급기준호봉표

학 교 호 봉	직급
21호봉 이상	기능주임
1호봉 ~ 20호봉	기능직원